

제327회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제8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2049)

2024. 12. 18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204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나. 제출일자 : 2024년 8월 12일
다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‘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’는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
- ‘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’의 기능을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‘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’의 기능을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에서 수행하도록 함(안 제12조제1항)
- 나. ‘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’ 관련 규정(구성 및 운영, 위원 임기 및 해촉, 회의 운영 등) 삭제(안 제12조제3항~제11항)

- 다. ‘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’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에서 하도록 함(안 제13조제2항)
- 라. 개정 조례 시행일을 ‘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’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(2024. 11. 9.)로 함(안 부칙 제1조)
- 마.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 심의사항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, 위촉 위원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 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 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 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 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- 라. 기타
 - (1) 입법예고(2024. 6. 7. ~ 6. 27.) 결과: 의견없음
 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‘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’를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는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

- 현재 본 조례 제12조에서는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동 조항에서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는 ①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, ②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, ③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, ④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·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최근 3년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고,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〈표〉 최근 3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현황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위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◦ 장애인복지분야의대학교수 ◦ 장애인복지기관을대표하는자 ◦ 장애인인권단체대표 ◦ 법조인 ◦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		
회의 개최 횟수	2회	2회	2회
회의 안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차(4.25~2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의안건 : 2022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(안) ○ 제2차(12.2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5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호선 - 2022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의결 -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논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차(5.12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의안건 : 2023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 ○ 제2차(12.8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차(2.23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의안건 : 제3기(2024~2028)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(안) ○ 제2차(5.1~5.3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(안) 심의
예산 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예산액(통계목) : 4,000천원(사무관리비) ◦ 예산산출근거: 회의수당150천원*10명*2회/자문수당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예산액(통계목) : 4,000천원(사무관리비) ◦ 예산산출근거: 회의수당150천원*10명*2회/자문수당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예산액(통계목) : 2,000천원(사무관리비) ◦ 예산산출근거: 회의수당150천원*6명*2회/자문수당등

나.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13조¹⁾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를 통해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.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①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, 조사,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총 10회 개최되었으며,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.

〈표〉 최근 3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현황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위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장애인 관련 단체장 ◦ 장애인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◦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◦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		
회의 개최 횟수	5회	1회	4회
회의 안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기회(4.20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위원장 선출 -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- 업무보고 및 제안사항 ○임사회(10.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의날 행사계획 제안 - 업무보고(어울림플라자 등) ○이동권보장소위원회(11.2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감소 방안 - 시각장애인 복지콜 증차 및 증원 -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기회(4.13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업무보고 - 장애인의날 주간행사 보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기회(4.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회 세부구성(부위원장 선출,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) - 주요 업무보고 ○자립지원소위원회(5.2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(안) 수립방향 및 세부과제 검토 ○자립지원소위원회(6.20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(안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철역 환승구간 이용 관련 ○일자리소위원회(11.28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일자리 및 생계급여 관계 - 공공일자리 연속성 및 장기계획 수립 ○탈시설소위원회(11.30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 -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-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부과제 검토 ○자립지원소위원회(7.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(안) 세부과제 검토
예산 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예산액(통계목) : 67,200천원 ° 예산산출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(위원수당)43,200천원 -(TF팀운영, 심의자료등) 24,0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예산액(통계목) : 67,200천원 ° 예산산출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(위원수당) 43,200천원 -(TF팀운영, 심의자료등) 24,0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예산액(통계목) : 41,400천원 °예산산출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(위원수당, 위원회개최등) 41,400천원

다. 위원회 통합 관련 (안 제12조제1항, 제3항~제11항, 제13조제2항)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시장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·보완 및 통·폐합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집행기관(조직담당관)에서는 이에 근거해 『‘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』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.
- 해당 개선계획에 따르면 복지정책실의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모두 장애인복지·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 권익향상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.

- 이에 상위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로 통합하여 ‘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’를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의 분과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음.
- 위원회의 기능상 분류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특별히 없으며,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나 통상 위원회의 기능에는 심의와 자문이 혼재되어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조 제4항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 -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의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례로 정한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.²⁾
-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내용을 반영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됨.

〈표〉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2조(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) ①	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12조(심의)	장애인	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(이하 “장애인복지위

2) 법제처. 「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. p.237

현행	개정안
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.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.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.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 3.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4.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5. 법조인 	<p>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.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.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현행	개정안
<p>6.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⑦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	

현행	개정안
<p><u>판단되는 경우</u></p> <p>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⑪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3조(보상금 지급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보상금의 지급절차, 금액,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보상금 지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장애인복지위원회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라. 기타 개정사항 (안제2조, 안제9조제2항, 안제10조, 안제10조의2, 안제10조의3, 안제10조의4)

- 그 외에도 본 조례개정안은 조문을 국어 맞춤법에 따르고 기관 명칭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<표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 -----

현행	개정안
<p>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‘장애’라 함은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.</p> <p>2. ‘장애인’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)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.</p> <p>3. ‘장애인 차별금지’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‘장애인 인권증진’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, 유엔</p>	<p>----- 뜻은 다음과 -----.</p> <p>1. “장애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장애인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“장애인 차별금지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“장애인 인권증진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5.·6. (생략)</p>	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)</p>	<p>제9조(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)</p>
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<u>시 홈페이지</u>에 개설·운영해야 한다.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노</u> <u>리집</u>-----.</p>
<p>제10조(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</p>	<p>제10조(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</p>
<p>기관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<u>기관</u>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기관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“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”----- -----.</p>
<p>② <u>기관</u>에는 기관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.</p>	<p>②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 ----- -----.</p>
<p>③ <u>기관장</u>은 상근으로 한다.</p>	<p>③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</u>-----.</p>
<p>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<u>기관</u>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<u>장애인</u> <u>권익옹호기관</u>----- -----.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의2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) ① <u>기관</u>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<u>기관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③ <u>기관</u>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장애인”이라 한다)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10조의3(운영 위탁) ① 시장은 <u>기관</u>의 운영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의2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) ①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----- ----- 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의3(운영 위탁) ① -----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<u>기관</u>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 <p>제10조의4(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) <u>기관</u>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, 시민단체 임직원,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<u>자</u>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의4(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)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----- ----- -----.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.</p>

마. 관련 조례개정 :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

- 이와 관련해 부칙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
〈표〉 본 조례개정안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」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	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p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장애인 <u>문제에 관한</u>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</u> 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

3 종합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내용을 반영해 유사·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해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.

문의처
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